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임이자・김석기・金炳旭

김성원 · 송언석 · 엄태영

이명수 · 박대수 · 김형동

이종성 · 정점식 · 권명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 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 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 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유재산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7조의2(국유재산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
	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
	<u>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u>
	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
	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
	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